



[시행 2021. 3. 24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4호, 2021. 3. 24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) 044-203-2718

1 () 이 규칙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 ()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4. 12. 26.>

2 2()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1. 3. 24.>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4.>

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. <개정 2021. 3. 24.>

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<신설 2021. 3. 24.>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 <신설 2021. 3. 24.>

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4.>

1.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4.>

[본조신설 2014. 12. 26.]

2 3()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6. 5. 4.>

[본조신설 2014. 12. 26.]

3 (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예술인 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4.>

1. 계약 당사자

2. 계약 기간

3.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

4.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

5.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

6. 계약 금액
 7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
 8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(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
 9.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
 10. 계약의 효력 발생, 변경 및 해지,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 11.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, 권리 · 의무의 승계금지
 12. 분쟁해결 관련 사항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4.>

<제434호, 2021. 3. 24.>

- 1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